
**2021년 중소기업
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
세부 운영기준**

2021. 3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목 차

| | |
|--|----|
| 1.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개요 | 1 |
| 2.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 운영기준 | 4 |
| 3.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| 7 |
| 3.1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| 7 |
| 3.2 국내·외 규격인증 지원 | 9 |
| 3.3 산업기술정보 제공지원 | 15 |
| 3.4 시제품(금형, 목업) 제작 지원 | 18 |
| 3.5 시험분석비 지원 | 22 |
| 3.6 홈페이지 제작 지원 | 24 |
| 3.7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| 26 |
| 3.8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| 28 |
| 3.9 국내 홍보·판로 지원 | 30 |
| 3.10 카탈로그 제작지원 | 32 |
| 3.11 모바일 앱 제작지원 | 34 |
| 3.12 제품 패키지 개선지원 | 36 |
| 3.13 온라인 (소형)회의 시스템 구축지원 | 38 |

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개요

가.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·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나. 지원규모 :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

다. 지원기간 : 2021. 3월 ~ 예산소진 시 까지

라. 지원내용 : 단계별 창안개발, 생산, 홍보·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

| 분 야 | 단위사업별 지원 |
|------|---|
| 창안개발 | · 국내·외 특허출원, 국내·외 규격인증, 산업기술정보 제공 지원 |
| 제품생산 | · 시제품 개발(금형, 목업) 지원, 시험분석 비용 지원 |
| 판로개척 | · 홈페이지 제작, 국내·외 전시회, 모바일 앱 제작, 제품패키지 개선, 국내 홍보판로 지원(전문잡지, 홍보 동영상, 카탈로그),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|

마. 지원대상

- 사업비 출연 시·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,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 -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·군 내 소재한 기업
 -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¹⁾을 영위하는 기업
 - 지식기반서비스업 :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(별표1)

<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현황 (27개 시군) >

- 본 사(9) : 수원, 화성, 군포, 광주, 오산, 하남, 의왕, 여주, 양평
- 남부권(4) : 용인, 안성, 이천, 평택
- 서부권(4) : 부천, 시흥, 광명, 김포
- 북부권(10) :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파주, 구리, 양주, 포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

-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(중소벤처기업부 및 시·군 지정) 또는 벤처 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내 입주기업 우대

<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(17개소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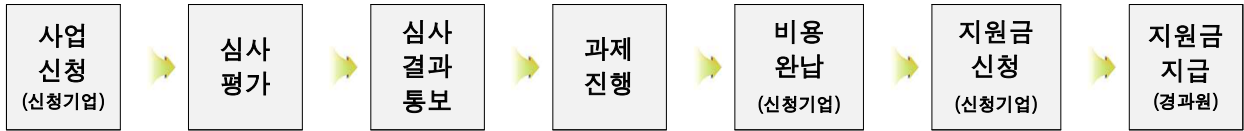
- 수원, 성남, 안양, 평택, 안성, 부천, 김포, 고양, 남양주, 의정부(1)(2), 파주, 구리, 양주, 포천, 의왕, 판교

-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)
 -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
 -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(별표2)
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
 -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 - 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

※ 지식서비스산업

- 정의 : 제조업과 직·간접적 융합발전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업종
- 특징 : 최종 생산자에 중간 단계의 주요정보나 전문적 지식을 창출, 제공
- 중요성 : 높은 성장가능성과 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

바. 지원절차



사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1. 3월 ~ 분기별 모집(3회)
 - 단, 신청 권역별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진행
-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egbiz.or.kr)
 - 홈페이지(온라인) 접속 →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관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→ 단위 지원사업 클릭 → 신청하기 버튼 클릭 →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→ 온라인 신청하기
- 제출서류 :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, 상황에 따라 담당자 요청 시 우편 또는 방문 접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|---|
| 필수 |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(온라인 작성)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작성)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 발급)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⑥ 해당사업 견적서 ⑦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 또는 세무서)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|
| 가점 항목 | ·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,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·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·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|

아. 문의 및 접수처(* 담당자는 변경될 수 있음)

| 권역(부서) | 지역 | 담당자 | 전화번호 | 주소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|
| 본사 (SOS지원팀) | 광주, 군포, 여주, 의왕, 오산, 하남, 양평, 화성, 수원 | 정기호 | 031-259-6059 |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|
| 북부권역 (북부권역센터) | 고양, 동두천, 연천, 포천 | 양이나 | 031-850-7124 |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|
| | 남양주, 가평 | 임선빈 | 031-850-7128 | |
| | 파주, 양주, 의정부, 구리 | 이영주 | 031-850-7131 | |
| 서부권역 (서부권역센터) | 시흥, 부천 | 김장식 | 070-7116-4811 |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|
| | 광명 | 조수만 | 070-7116-4515 | |
| | 김포 | 김남수 | 070-7116-4816 | |
| 남부권역 (남부권역센터) | 안성, 이천 | 이연희 | 070-7726-9325 |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|
| | 용인, 평택 | 이현아 | 031-651-7162 | |

자. 지원내용 : 기업 당 연간 최대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

○ 총비용 50% 지원(각 과목별 지원한도 이내), 기업 자부담 50%

| 구분 | 지원 단위사업 | 세부내용 | 최대 지원한도 (지원비율) | 비고 |
|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------|
| 창안 개발 |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| • 디자인, 상표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 (상표출원 지원 : 국내·해외 / 디자인 출원 지원 : 국내) | 특허(520만원) 실용(360만원) 국내상표(200만원) 국내디자인(280만원) 해외상표(500만원) (50%) | 사후 지원 |
| | | • 실용신안, 국내 출원 시 관납료, 선행기술조사비, 대행 기관 수수료 등 | | |
| | | •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 | 500만원 (50%) | |
| | 국내·외 규격인증 지원 | • (국내) KS,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,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| 300만원 (50%) | |
| | | • (국외) UL,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| 700만원 (50%) | 사후 지원 |
| 산업기술 정보제공 | •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, 기업체에 제공 | 200만원 (100%) | | |
| 제품 생산 | 시제품제작 지원 (금형·목업) | •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| 금형(1,400만원) 목업(500만원) (50%) | |
| | 시험분석 지원 | •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·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| 150만원 (50%) | 사후 지원 |
| 판로 개척 | 홈페이지 제작지원 | • 한글 /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| 200만원 (50%) | |
| | 국내·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| • 국내·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·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| 국내(300만원) 해외(500만원) (50%) | |
| | 모바일 앱 제작 지원 | •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| 150만원 (50%) | |
| |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| •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, 포장지 등 디자인·제작비용 지원 | 300만원 (50%) | |
| | 온라인 회의 시스템 | • 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| 150만원 (50%) | |
| | 국내홍보 판로 지원 | 전문잡지 | •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| 300만원 (50%) |
| 홍보 동영상 | | •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(일반영상 또는 3D 영상) | 일반(300만원) 3D(400만원) (50%) | |
| 카탈로그 | | •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 위해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| 200만원 (50%) | |

※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

가.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수정 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-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)을 함께 제출
- 재무제표 작성·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) 제출
-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,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
-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·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 제출
 - 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
-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(민원24 발급) 제출
 - ※ 공장등록증은 불인정
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,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(www.bi.go.kr(창업넷) 확인), 시·군 지정 창업보육센터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입주기업 신청 시, 경기창업벤처센터 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
나.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

-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-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 할 수 없음

다.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

-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에 사업 신청서식 중 “단위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” 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
- 사전승인 없이 대행업체, 과제범위 및 내용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
- 변경의 경우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, 선정된 지원과목의 변경은 불가함
 - 다만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함

라. 지원결정 취소사항

-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·완료된 경우(사후신청 사업은 제외)
-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사업완료 시점 선정기업이 어떠한 답변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완료 제출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(과제)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음
-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, 지출한 비용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-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(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)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
-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,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-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
마.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

-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 이체 형태로 지급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. 단,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
- (법인)카드 사용 시 (법인)카드 사본, 카드사용 영수증, 결제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
-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

바.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

- 선정기업의 사업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미실시 등에 따른 사업 과제 미완료의 경우 해당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
-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본 사업 만료 30일 이전까지 지출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
- “선정된 과제 종료” 라 함은 선정 기업이 사업 완료 후 대행업체에 최종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것을 말함
- “본 사업 만료” 라 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마감을 말함
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 - 제출서류 : 지원금신청서, 완료보고서, 완료 결과물, 지방세납세증명서, 선정기업 통장사본(선정기업명 계좌)
 - 지출증빙 : 세금계산서, 온라인 입금증(이체확인증),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한 자료 일체(필요시)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사.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

- 공고일 기준,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① 민원야기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②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
- ③ 휴·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

아. 위법·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「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- 지원사업 단순 포기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은 각 센터(권역) 담당자가 상황에 맞도록 센터별 사업계획 시 수립

3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단위지원 사업별 운영기준

3.1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

가. 지원목적

-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

나.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(* 부가세 기업부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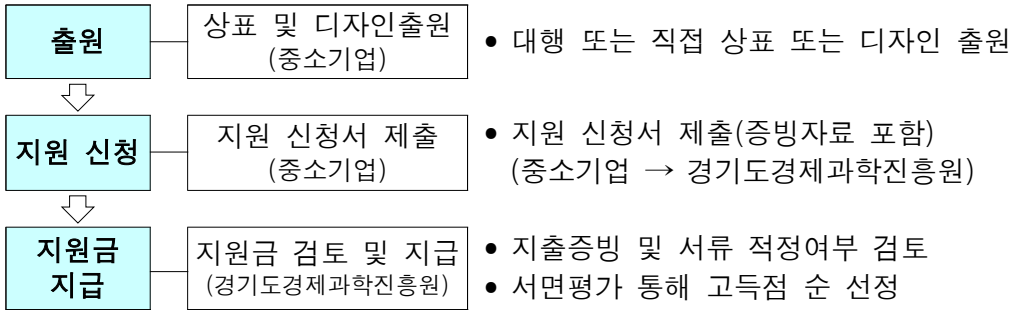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지원분야 | 지원금액 | | 지원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 건당 지원한도 | 업체당 지원한도 | |
| 국내 | 상표출원 | 25만원 | 총 비용의 50% 200만원 한도 | - 출원에 따른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 -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- <u>출원 후 지원신청</u> |
| | 디자인출원 | 35만원 | 총 비용의 50% 280만원 한도 | |
| | 실용신안 | 90만원 | 총 비용의 50% 360만원 한도 | - 출원에 따른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,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-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- <u>출원 전 지원신청</u> |
| | 국내특허 | 130만원 | 총 비용의 50% 520만원 한도 | |
| 국외 | 해외특허 | 500만원 | 총 비용의 50% 500만원 한도 | - 출원에 따른 관납료(송달료, 국제출원료 등), 대행기관 수수료, 선행기술조사비용, 번역료 등 -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- <u>출원 전 지원신청</u> |
| | PCT (특허협력조약) | 250만원 | 총 비용의 50% 500만원 한도 | |
| | 해외상표 | 250만원 | 총 비용의 50% 500만원 한도 | - <u>출원 후 지원신청</u> |

-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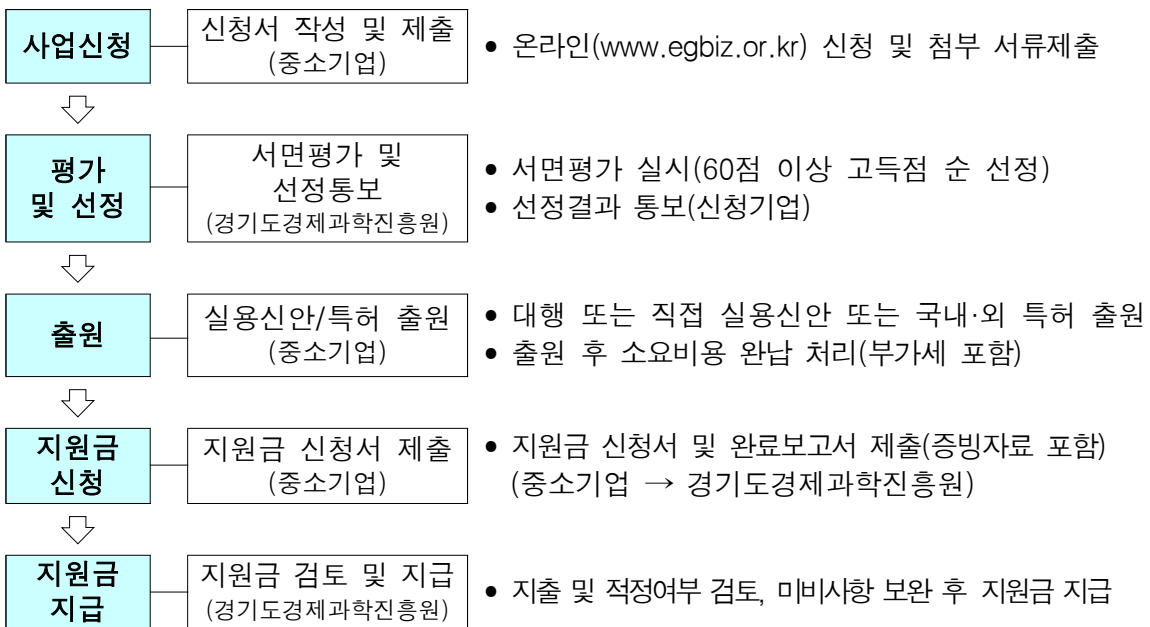
-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
- 사업완료는 모든 비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, 실제 출원서 발급여부(출원번호 발급)를 기준으로 함(* 출원 예정 불인정)
- 법인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해당 기업 내 출원 당사자 개인명의로의 산업 재산권 출원은 지원 제외. 단, 공동명의 가능(* 공동명의 출원은 법인기업에 한함)
-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(실용신안 포함)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지원제외
- 해외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제출
-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
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○ 상표(국내 및 해외) 및 디자인 출원(국내) 지원 : 출원 후 지원신청



○ 실용신안 및 국내·외 특허 출원(해외 PCT 포함) 지원 : 출원 전 지원신청



라. 제출서류

○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(출원 후 지원신청)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|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【제9호 서식】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: 출원번호 통지서(서지) - 전자세금계산서, 관납료 등 영수증, 온라인 입금증 -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발급) (해당시 제출) |

○ 국내·외 특허 출원(해외 PCT 포함) 및 실용신안 지원(출원 전 지원신청)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|
| 지원 신청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 추진계획서 【제7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·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 |
| 지원금 신청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금 신청서 【제8호 서식】 -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: 출원번호 통지서(서지) ※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필수 제출 - 지방세납세 증명서(민원24)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전자세금계산서, 관납료 등 영수증, 온라인 입금증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|

3.2 국내·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

가. 지원목적

-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한 국내·외 규격 신규 인증 획득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
나. 지원내용

○ 지원분야

- 국내규격 : 인증 획득 전 지원신청(사전신청)
 - KS,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, 법정 임의인증 등 국내규격 [참고1]
- 해외규격 : 인증 획득 후 지원금 신청(사후신청)
 - UL, FCC, CSA, CE, GOST, CCC마크, JATE, VCCI 등 제품국제규격 인증 [참고2]
- 그 외 기업의 품질,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
- ※ 단, 제출된 신청서 검토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 결정

○ 지원금액

| 구분 | 기업당 지원한도 |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| | |
|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세부항목 | 지원한도 | 지원내용 |
| 국내 | 총 비용의 50% 300만원 한도 | 인증비용 | 인증비용의 50% 100만원 한도 | 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|
| | | 시험비용 | 시험비용의 50% 150만원 한도 | 시험기관에서 제품(샘플)에 대한 시험·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|
| | | 컨설팅비용 | 컨설팅비용의 50% 50만원 한도 |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(MD),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|
| 해외 | 총 비용의 50% 700만원 한도 (기업당 1제품 1분야에 한해 지원) | 인증비용 | 인증비용의 50% 400만원 한도 | 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|
| | | 시험비용 | 시험비용의 50% 150만원 한도 | 시험기관에서 제품(샘플)에 대한 시험·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|
| | | 컨설팅비용 | 컨설팅비용의 50% 150만원 한도 |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(MD),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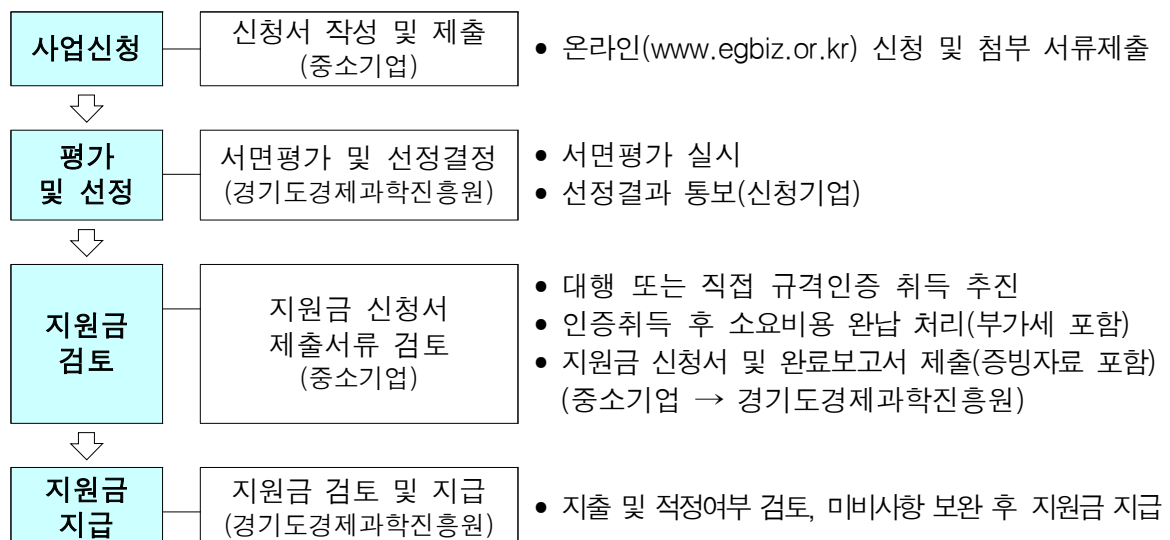
○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
- 시스템 인증(ISO)은 지원 제외
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○ 규격인증 대행기관(인증기관, 시험기관, 컨설팅기관) 조건

-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인증, 국제기구(IECEE) 공인시험소,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(기관)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 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(기관)
-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,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(장비, 인력)능력을 보유해야 함.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○ 국내규격 인증(사전 신청과제)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국내·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추진계획서 【제10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국내·외 규격 인증획득 견적서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 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·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원금신청서 【제11호 서식】 - 국내·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【제12호 서식】 (컨설팅 추진 시 작성) - 국내·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도일지 【제13호 서식】 (컨설팅 추진 시 작성)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국내·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: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, 시험성적서 등 - 전자세금계산서, 관납료 등 영수증, 온라인입금확인증 - 지방세납세증명서(민원24)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|

○ 해외규격 인증(사후 신청과제)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-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·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원금신청서 【제14호 서식】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국내·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: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, 시험성적서 등 - 전자세금계산서, 관납료 등 영수증, 온라인입금확인증 - 지방세납세증명서(민원24)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-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증빙 일체 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|

[참고 1]

국내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

| | | |
|--|--|---|
| <p>[KS (한국산업규격)]</p> <p>[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]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·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</p> |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|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|
| <p>[그 외 법정강제인증]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/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지 자재·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·등급 인증 항공기</p> |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력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,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,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|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의 의리기품목허가(신고)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합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|
| <p>[법정임의인증]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(KS 인증)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/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설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(건설)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</p> |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·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(NEP)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(일반)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|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(환경)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(EPC)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|
| <p>[민간인증] 한국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(CA마크)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(HB마크) 한국금속올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(KARSE) 가정용주방용구(쌍크대)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SS 표시인증 KOVA마크(단체표준)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(우수EQ마크)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(한국플라스틱표준) 표시인증 Eco-Quality인증마크(EQ 인증마크)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(LPG판매)</p> | 품질보증제도(Q마크) K 마크제도(K마크)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(Hygiene-Safety)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| SSS인증 제품안전성(S마크)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(ST)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(EMF마크) 전자파환경인증(EMC) TTA인증 콜센터품질인증(CQ)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|

※ 단, 상기 외 규격을 신청할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를 결정

【참고 2】

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(241개)

| | | | | | |
|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AAR(미국철도협회) | 25 | AQSIQ(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) | 49 | CE(유럽공동체마크) |
| 2 | ABS(미국선급협회) | 26 | ARAI(인도자동차협회) | 50 | CEBEC(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) |
| 3 | ACMI AP(미국창작재료협회) | 27 | ARTC(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) | 51 | CFDA(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) |
| 4 | ACRS(호주신뢰성인증) | 28 | AS(호주규격협회) | 52 | CGAC(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) |
| 5 | AD2000(독일압력용기인증) | 29 | ASME(미국기계학회) | 53 | CMA(중국계측학허가인증) |
| 6 | AdBlue(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) | 30 | ASTM(미국시험재료협회) | 54 | CNS(대만국가표준) |
| 7 | ADR(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) | 31 | A-Tick(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) | 55 | COFETEL(멕시코통신인증) |
| 8 | AEC-Q200(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) | 32 | ATP(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성인증) | 56 | Conforming Golf balls(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) |
| 9 | AEM(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) | 33 | BAA(일본자전거안전기준) | 57 | COSPAS-SARSAT(조난경보기위치정보제품인증) |
| 10 | AENOR(스페인규격협회) | 34 | BABT(영국통신기기승인) | 58 | COSQC(이라크표준) |
| 11 | AGA(가스안전인증-호주) | 35 | BAF표준(알리지협회) | 59 | CPRI(인도전기전력인증) |
| 12 | AGA(미국가스협회) | 36 | BBA(영국건자재인증) | 60 | CPSC (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) |
| 13 | AHRI(미국계냉난방협회) | 37 | BIS(인도제품인증) | 61 | CPSIA(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) |
| 14 | ALE 1.0(RFID 제품인증) | 38 | BLUESIGN(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) | 62 | CQC(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) |
| 15 | AMCA(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) | 39 | Bluetooth(블루투스제품인증) | 63 | CR(대만선급) |
| 16 | AMECA(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) | 40 | BOKEN(일본방직검사협회) | 64 | CSA(캐나다표준규격) |
| 17 | ANATEL(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) | 41 | BQB(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) | 65 | CSEL(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) |
| 18 | ANMAT(아르헨티나의로기기인증) | 42 | BRCFOOD(식품안전글로벌규격) | 66 | CSQL(중국안전품질승인) |
| 19 | ANSI(미국규격협회) | 43 | BSI(영국표준협회) | 67 | CSTB(프랑스건축자재인증) |
| 20 | ANSI/ASHRA(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) | 44 | BSI BS EN489(유럽열(히트)파이프지침) | 68 | CTI(미국냉각탑협회,미국열성능) |
| 21 | ANSI/BHMA(미국건축제품인증) | 45 | BSMI(표준검험국) | 69 | C-Tick(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) |
| 22 | ANSI/BIFMA (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) | 46 | BV(프랑스선급협회) | 70 | CU(러시아강제인증) |
| 23 | ANVISA(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) | 47 | CCC(중국필수인증) | 71 | DEMKO(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) |
| 24 | API(미국석유학회) | 48 | CCS(중국선급인증) | 72 | DGCRF(프랑스소비자보호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) |
| 73 | DIN(독일규격협회) | 99 | FSC(국제산림관리협회) | 125 | INMETRO(브라질강제인증) |
| 74 | DLC(북미에너지절감인증) | 100 | FTC(화염시험국제인증) | 126 | IRAM(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) |
| 75 | DLMS-COSEM(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) | 101 | GL(독일선급협회) | 127 | ISIRI(이란강제인증) |
| 76 | DNV(노르웨이선급협회) | 102 | Gold Seal(미국음용수관련인증) | 128 | ISO7096(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) |
| 77 | DOT(미국운수성) | 103 | GOST(러시아표준규격) | 129 | 일본선박 형식승인) |
| 78 | ECOCERT(프랑스생산공장인증) | 104 | GOST-K(카자흐스탄인증) | 130 | JAS(일본유기제품인증) |
| 79 | Eco-Labeling(EU 환경마크) | 105 | GOTS(국제유기농산물국제규격) | 131 | JATE(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) |
| 80 | EFSA(유럽식품안전청) | 106 | Greenguard (친환경인증시스템) | 132 | JET PVM(일본태양광인증) |
| 81 | e-Mark(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) | 107 | GS(독일품질안전) | 133 | JIS(일본표준규격) |
| 82 | EMV(국제IC카드보안인증) | 108 | GTT(프랑스GTT선급) | 134 | JPAL(일본의로기기규제법) |
| 83 | ENEC(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) | 109 | G7Master(국제인쇄표준) | 135 | KEMA(네덜란드전기시험소) |
| 84 | Energy Star(미국에너지스타) | 110 | HALAL(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) | 136 | KOSHER(유대교식품적법인증) |
| 85 | EPA(미국환경보호국인증) | 111 | HAS(싱가포르의로기기등록) | 137 | KTW(독일식수관련인증) |
| 86 | ESV(유럽위성지구관련인증) | 112 | HC(캐나다의로기기인증) | 138 | KUCAS(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) |
| 87 | ETL SANITATION(국제보건위생인증) | 113 | HDMI(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) | 139 | LFGB(독일식품용품법) |
| 88 | EU2092/91(EU의유기농식품인증) | 114 | HIRF (HighIntensityRadiatedFields) | 140 | LGA(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) |
| 89 | Regulation(EC)(유럽화학제품유해물질규제지침) | 115 | HSNO(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) | 141 | LPCB(보안및화재예방인증) |

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|---|
| 90 | EU-MED(유럽선박장비인증) | 116 | IAPMO(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) | 142 | LR(영국선급협회) |
| 91 | F☆☆☆☆(일본친환경규격) | 117 | IC(캐나다산업성) | 143 | MiamiDade NOA(미국건축자재인증-플로리다주) |
| 92 | FCC(미국연방통신위원회) | 118 | ICASA(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) | 144 | MIL-STD-810G(미국육군장비규격) |
| 93 | FCN(미국식품접촉물질(재료)등록제도) | 119 | ICC-ES(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) | 145 | MOH(중국보건부인증) |
| 94 | FDA(미국식품의약품국) | 120 | IECEE(IEC안전규격상호인증)-CB | 146 | MPA(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) |
| 95 | FIMKO(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) | 121 | IECEX(국제방폭상호인증) | 147 | MPHPT(일본우정통신성) |
| 96 | FIBC(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) | 122 | IFOAM(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) | 148 | MPR2(전자파측정및검사국제규격) |
| 97 | F-mark(일본전기용품및부품) | 123 | i-LIDS(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) | 149 | NADCAP(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) |
| 98 | FMVSS(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) | 124 | IMQ(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) | 150 | NAL(중국통신인증) |
| 151 | NCHRP(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) | 174 | PatternApprovalCertificate(러시아계측기인증) | 197 | SIRIM(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) |
| 152 | NEMKO(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) | 175 | PCI(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) | 198 | S-mark(일본전기용품시험소) |
| 153 | NEPSI(중국방폭관련인증) | 176 | Profibus(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) | 199 | SNI(인도네시아국가규격) |
| 154 | NF(프랑스표준규격) | 177 | PSB(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) | 200 | SolarKeymark(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) |
| 155 | NFPA1711(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) | 178 | PSC(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) | 201 | SONCAP(나이지리아강제인증) |
| 156 | NFRC (창호단열규격) | 179 | PSE(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) | 202 | SP(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) |
| 157 | NIJ(미법무성사법연구소) | 180 | PTCRB(북미휴대폰인증) | 203 | SRCC(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) |
| 158 | NIM(중국계량과학원) | 181 | RCM(호주전기전자장비인증규격) | 204 | SRRC(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) |
| 159 | NIOSH(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) | 182 | RDSO(인도철도인증) | 205 | TC(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) |
| 160 | NIPH(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) | 183 | REACH(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) | 206 | TC005(정보사무기기효율국제인증) |
| 161 | NK(일본선급협회) | 184 | RINA(이탈리아선급협회) | 207 | TELEC(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) |
| 162 | NMMA(미국요트보트트레일러관련인증) | 185 | RoHS(유럽전기, 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) | 208 | TFDA(대만의로기기) |
| 163 | NOM(멕시코제품안전규격) | 186 | RS(러시아선급협회) | 209 | TGA(호주의약품규제기관) |
| 164 | NOP(유기제품인증) | 187 | RTN(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) | 210 | Toxproof(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) |
| 165 | NORSOK(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) | 188 | RussiaHygienicConclusion(러시아위생증명) | 211 | TRA(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) |
| 166 | NPC(소음공해규제기관) | 189 | SAIGLOBAL(호주품질보증협회: QAS) | 212 | TSE(터키강제인증) |
| 167 | NR(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) | 190 | SASO(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) | 213 | TUV(독일기술관리협회) |
| 168 | NRTL(미국국가인정시험소) | 191 | SCS (미국 과학적 친환경인증) | 214 | UPC(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) |
| 169 | OE(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) | 192 | SEMI(유럽반도체장비인증) | 215 | USCG(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) |
| 170 | Oeko-tex(유럽섬유환경인증) | 193 | SEMKO(스웨덴전기기기협회) | 216 | USDA(미국농무성환경인증) |
| 171 | OFTA(홍콩이동통신인증) | 194 | SG-Mark(소비자제품안전인증) | 217 | VCCI(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) |
| 172 | OIML(국제법정계량기구) | 195 | SIL(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) | 218 | VDE(독일전기기술자협회) |
| 173 | Open ADR(전력수요관리인증) | 196 | SINCERT(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) | 219 | VdS(독일보험협회인증) |
| 220 | Vincotte(벨기에환경인증) | 228 | WRAS(영국수질협회인증) | 236 | 일본위생허가 |
| 221 | WaterMark(호주배관제품인증) | 229 | Z-WaveProductCertification(전자제품상호호환인증) | 237 | 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(RegistrationCertificateofMedicalDevices) |
| 222 | WELS(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) | 230 | 3-A(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) | 238 | 중국미생물수입등록 |
| 223 | WHI(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) | 231 | 소방안전증명서(러시아) | 239 | 중국유기농식품인증 |
| 224 | WHO | 232 | 수출입수산물,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 | 240 | 중국수입참가제등록 |
| 225 | WPC(인도통신기기인증) | 233 | 일본건축자재평가 | 241 | 중국위생허가 |
| 226 | WPS(선급용접절차승인) | 234 | 일본ECOMark(일본친환경제품인증) | | |
| 227 | WQA(미국수질협회) | 235 | 일본불연재료인증 | | |

※ 단, 상기 외 규격을 신청할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를 결정

3.3 산업기술정보 제공지원

가. 지원목적

- 도내 중소기업에게 핵심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및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 고도화 및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.

나. 지원내용

○ 지원분야

- 기업의 핵심기술 및 주변 관련기술에 대한 전 세계 과학기술 정보조사 자료제공
 - 전 세계 저널논문, 학위논문, 연구보고서, 특허, 규격, 기타분석자료 등
- 정보검색, 정보처리, 정보 분석, 산업재산권관련 등 정보 활용 교육 지원
 - 기업체 방문 및 그룹으로 교육(기업체 수요 조사 후 시행)

※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간 업무협약 체결로 신청기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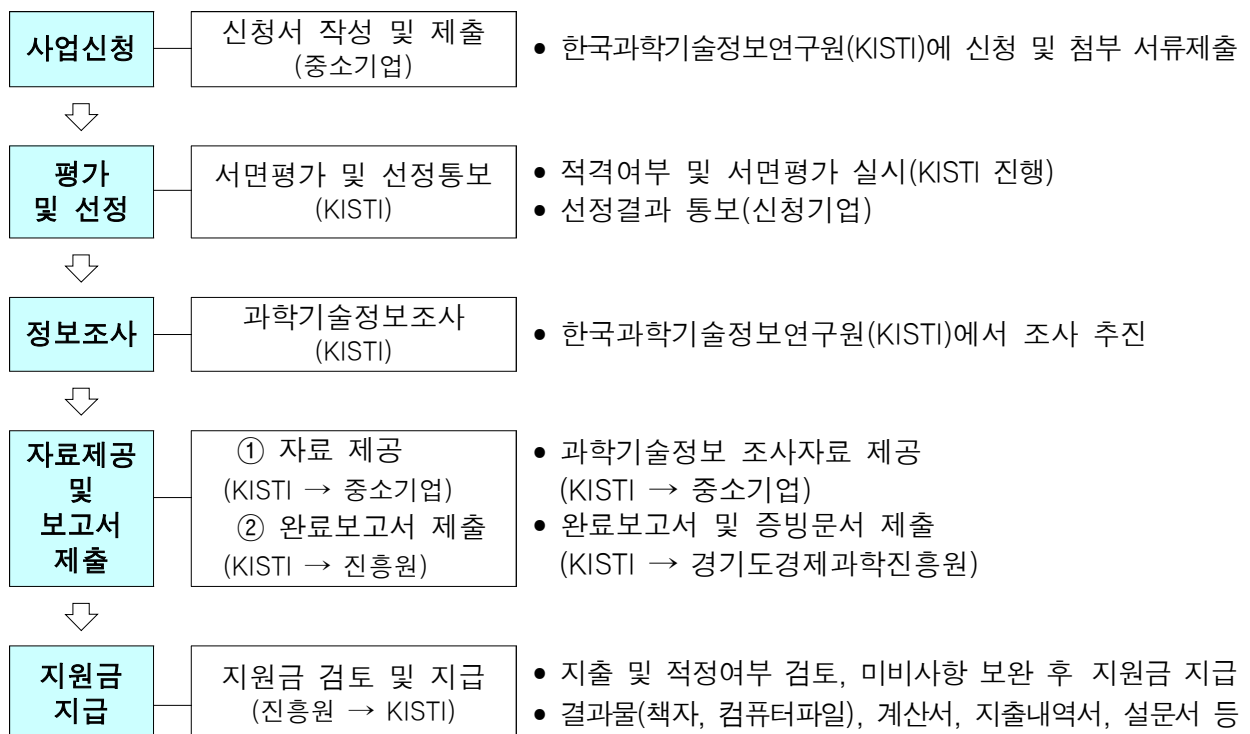
○ 지원금액

- 총 소요비용의 100%, 최대 200만원 한도(기업 당 1회 지원)

○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)

-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 제외
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
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기술정보제공 지원신청서 【제15호 서식】 - 산업기술정보제공 지원 정보조사신청서 【제16호 서식】 -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【제1호 서식】 - 기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요청자료 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정보제공 결과물 : 과학기술정보 제공 책자, 컴퓨터 파일 등 - 전자세금계산서 사본, 지출내역서 일체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|

마. 문의 및 접수처

| 권역(부서) | 담당자 | 전화번호 | 주소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(SOS지원팀) | 정기호 | 031-259-6059 |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|
|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| 구영덕 | 02-3299-6035 |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|

【참고 3】

제공되는 과학기술정보조사 Database 및 Content

| Database | Content |
|---|--|
|  <p>www.yeskisti.net 과학기술정보포털사이트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보분석보고서, 기술동향, 과학기술문헌, 연구보고서, 인력정보 등 한국특허, 미국특허, 일본특허, 유럽특허, 국제특허 제공 총 66백여 만건 수록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학분야의 전세계 우수 저널에 게재된 우수 연구정보를 포함하는 ISI Citation Indexes(인용 색인)을 제공하는 DB 약 6,000여종의 기술문헌잡지 수록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학분야 세계최대DB인 Compendex, 5,000여종 8백만건 보유 전기전자분야 DB인 Inspec, 5,000여종, 8백만건 보유 미국 주요기관이 발행하는 기술리포트DB인 NTIS 등 서비스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 세계 4,000여개의 출판사, 14,000여종의 저널논문과 1억 6,700만개의 웹페이지를 동시 탐색 혁신적인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초록/인용 데이터베이스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국 Cas, 일본 JST, 독일 FIZ-Karlsruhe가 공동 참여하여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과학기술분야 데이터뱅크 특허정보, 서지정보, 수치정보, 전문정보 등 200여종 DB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특허청 : 국내외 산업재산권관련 정보제공 일본특허청 : 일본 특허/실용신안/의장/상표 제공(일본어검색) (www.ipdl.ncipi.go.jp) 미국특허청 : 미국특허/상표 제공(www.uspto.gov) 유럽특허청 : 전세계 특허 및 실용신안 제공(ep.espacenet.com) 세계지적재산기구 : PCT특허 검색(www.wipo.int) 기타, 중국/대만 등 각국의 특허청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Derwent Innovations Index(DII)로, 전세계 41개국 이상의 각 분야의 특허 정보 및 각 특허의 인용 정보 1,300만건 이상제공 Derwent World Patent Index), Derwent Patent Citation Index), Derwent Chemistry Resources로 세분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본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상표 및 해외 62개국 4국제기구의 특허정보인 INPADOC을 서비스 현재, 일본특허/실용만 약 4천만건을 수록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계 최고의 특허 정보원으로 3500만 건 이상의 특허 문헌 제공 미국,유럽,일본,독일,PCT,INPADOC 등 |

3.4 시제품(금형, 목업) 제작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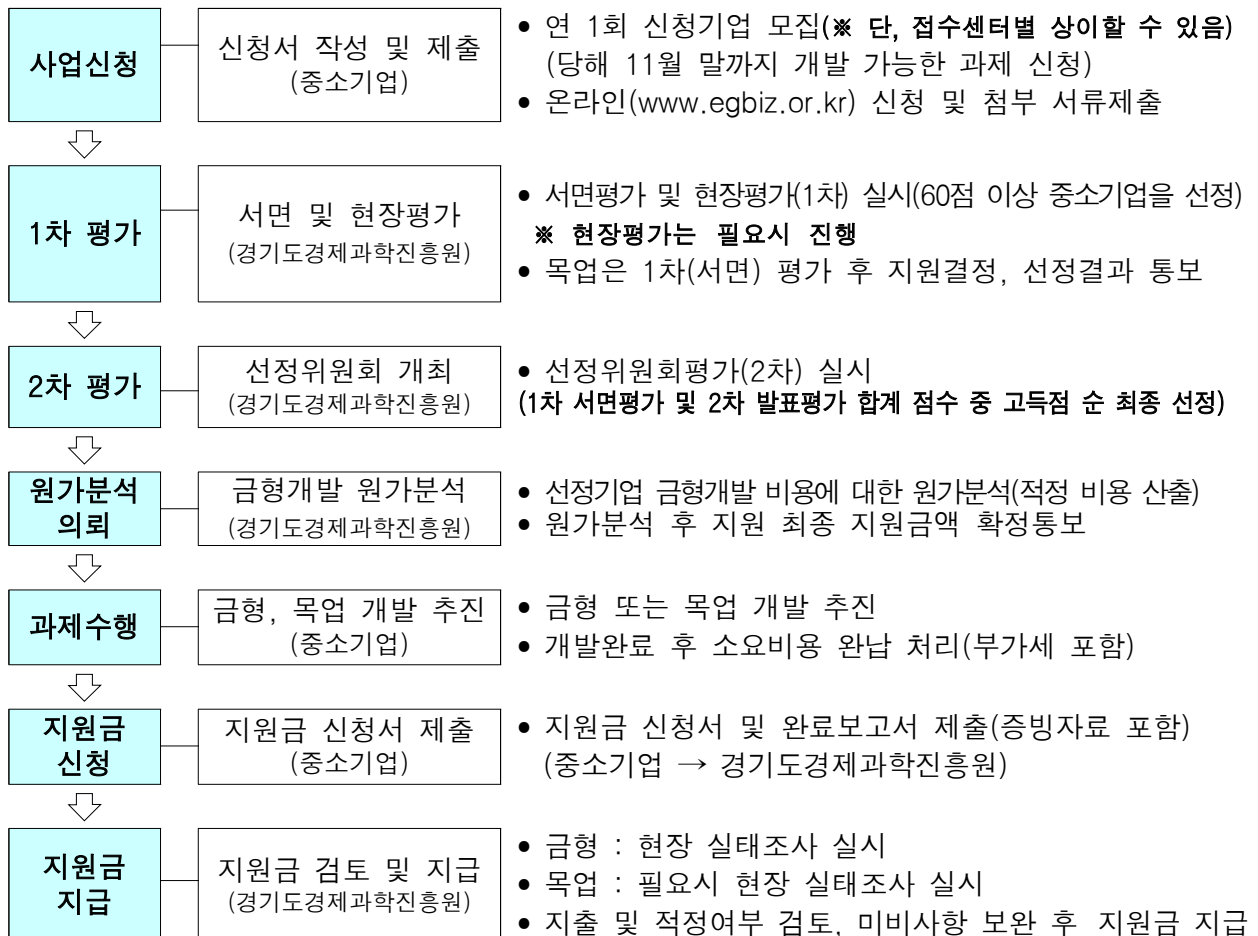
가. 지원목적

- 우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제품(금형, 목업)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품경쟁력 강화

나. 지원내용

- 지원분야
 - 금형 : 프레스 금형, 플라스틱 금형, 초경금형, 분말야금 금형, 다이캐스팅 금형, 단조금형, 압출금형 등
 - 목업 : 외관 목업, 워킹 목업, 전시용 목업
- ※ 자세한 분야는 【참고 4】 확인
- 지원금액 : 총 소요비용 50%(금형 1,400만원 한도, 목업 500만원 한도)
 - 금형 : 최종 선정 후 총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후 지원 금액 결정
- 선정방법
 - 금형 : 1차 서면평가, 2차 발표심사(선정위원회)를 거쳐 지원결정
 - 목업 : 1차 서면평가 후 지원결정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시제품(금형/목업)개발 지원 추진계획서 【제17호 서식】 - 시제품(금형/목업)개발 견적서 【제18호 서식】 - 시제품(금형/목업)개발 세부견적서 【제19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(※ 금형, 금속가공 등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종 확인 必)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 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제품(금형/목업)개발 지원금 신청서 【제20호 서식】 - 시제품(금형/목업)개발 지원 완료보고서 【제21호 서식】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시제품(금형/목업)개발 결과물 : 금형, 목업 도면, 결과물 사진 - 시제품(금형/목업)개발 견적서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) - 전자세금계산서, 온라인입금확인증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|

○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
- 시제품 제작 대행업체 선정의 경우 금형 및 금속 가공 등 실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체 선정 필수
 - ※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금형 및 금속 가공 관련 표기 확인 필수
- 해외 제작업체 통한 진행 불가. 국내 제작업체에 한하여 제작 인정함
- 금형(또는 목업)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이 시제품 제작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불가(선정 제외)
- 금형 제작의 경우 최종 산출물인 금형에 본 지원사업명 음각 표기 또는 명판 부착 요망
- 지출 증빙 시 어음 증빙형태 제출 불인정
- 접수된 과제(금형)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지원 제외
-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
- 자본잠식 등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
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○ 최종 결과물(금형) 음각 표기 방법

-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(Mold Base)에 음각표기 또는 명판 부착을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

※ 표기 시안(예시)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완료일 | 0000년 00월 00일 |
| 금형 제작업체명 | 000000 |
| 지원사업명 |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|

【참고 4】

시제품(금형, 목업) 지원 대상

| 금형종류 | | 세 부 내 용 |
|----------|-----|--|
| 프레스 금형 | 제품류 | - I.C, T.R 반도체 금형, 반도체리드프레임용 금형, Trimming & Forming 금형 - Connector & Terminal용 금형 - Motor Core용 금형 - Micro Switch용 금형 - Computer, VTR, Audio, Video, TV, Chassy용 금형 등 |
| | 금형류 | - Progressive 금형 - 복합금형(Compound Die) - Fine Blanking 금형 - Multi Forming 금형 - Transfer 금형 |
| 플라스틱 금형 | 제품류 | - 카메라, 현미경, 망원경, 복사기, 레이저, 안경렌즈용 금형 - 콤팩트디스크, 플로피디스크 및 동 케이스용 금형 - Audio & Video Tape Case용 금형 - 인공장기용 금형,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어 금형 - Computer, VTR, Audio, Video, TV 캐비닛 및 백카바용 금형 -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금형 |
| | 금형류 | - Rotational Mould - 이색사출 금형 - 파인세라믹용 금형 - Strecth Blow 금형 - 실리콘고무사출 금형 - 플라스틱사출Stack 금형 |
| 초경금형 | | - 초경합금으로 제작된 금형 |
| 분말야금 금형 | | - 금속분말을 고온고압으로 압축성형하는 금형 |
| 다이캐스팅 금형 | | - 정밀 다이캐스팅 금형 |
| 단조금형 | | - 정밀 냉간 단조 금형 |
| 압출금형 | | - 파이프 등 압출방식으로 성형하는 금형 |

| 목업종류 | 세 부 내 용 |
|-------|--|
| 외관목업 | - 외관상 디자인 등을 확인위해 만든 목업으로 내부의 기구적인 작동이나, PCB등이 없음. |
| 워킹목업 | - 내부에 기구적인 부분들과 PCB등이 모두 갖추어져서 실제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 기능이 가능한 목업 |
| 전시용목업 | - 전시회 참관이나 브로셔 사진제작 등 양산 전에 양산품과 똑같이 만드는 목업으로 도색과 후가공 등을 모두 완료한 목업 |

3.5 시험·분석비 지원

가. 지원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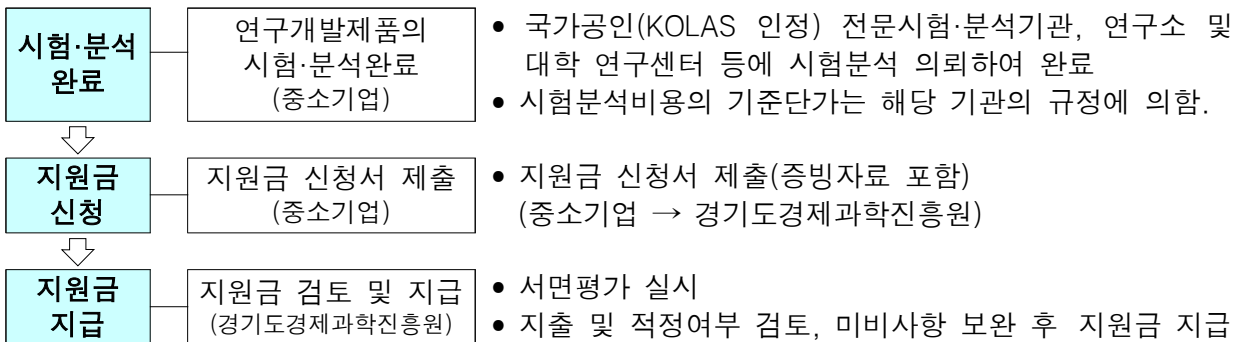
-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험·분석비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

나.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: 국가공인 전문시험·분석기관·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의 시험·분석 비용 지원
- 지원금액 : 총 소요비용의 50%, 최대 150만원 한도(기업 당 1회 지원)
-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 -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 제외
 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
 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○ 시험·분석 완료 후 지원신청



라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|-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시험분석 지원금 신청서 【제22호 서식】 - 시험분석 지원 결과물 : 시험분석 성적서(제품 당) - 시험분석 견적서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) - 전자세금계산서, 온라인입금확인증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발급) (해당시) |

【참고 5】

국가공인(KOLAS 인정) 전문 시험·분석기관 외 시험·분석이 가능한 기관

| 구 분 | | 대학 및 연구소(연구센터)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대학 및 연구소(29)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경기대학교 □ 경기과학기술대학교 □ 경민대학 □ 경희대학교 □ 계원예술대학 □ 김포대학 □ 단국대학교 □ 대진대학교 □ 동서울대학 □ 두원공과대학 □ 명지대학교 □ 수원대학교 □ 수원여자대학 □ 가천대학교 □ 성균관대학교 □ 신흥대학 □ 아주대학교 □ 연성대학교 □ 오산대학 □ 안산공과대학 □ 용인송담대학 □ 유한대학 □ 한경대학교 □ 청강문화산업대학 □ 한국산업기술대학교 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□ 한국섬유소재연구소 □ 한국항공대학교 □ 한국폴리텍여자대학 등 |
| 대학 연구센터 (10) | RRC/TIC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수 원 대(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, □ 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) □ 명 지 대(천연신기능소재연구센터) 등 |
| | GRRC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가 천 대(신소재응용 연구센터) 등 |
| | TIC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성균관대(기술혁신센터) □ 경희대(영상정보 소재기술 연구센터) □ 가 천 대(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) □ 수원여대(식품소재) 등 |
| | 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경 희 대(연구실험지원센터), □ 경기바이오센터(신약, 바이오등), □ 한경대(무기물, 오염물질 등) |

3.6 홈페이지 제작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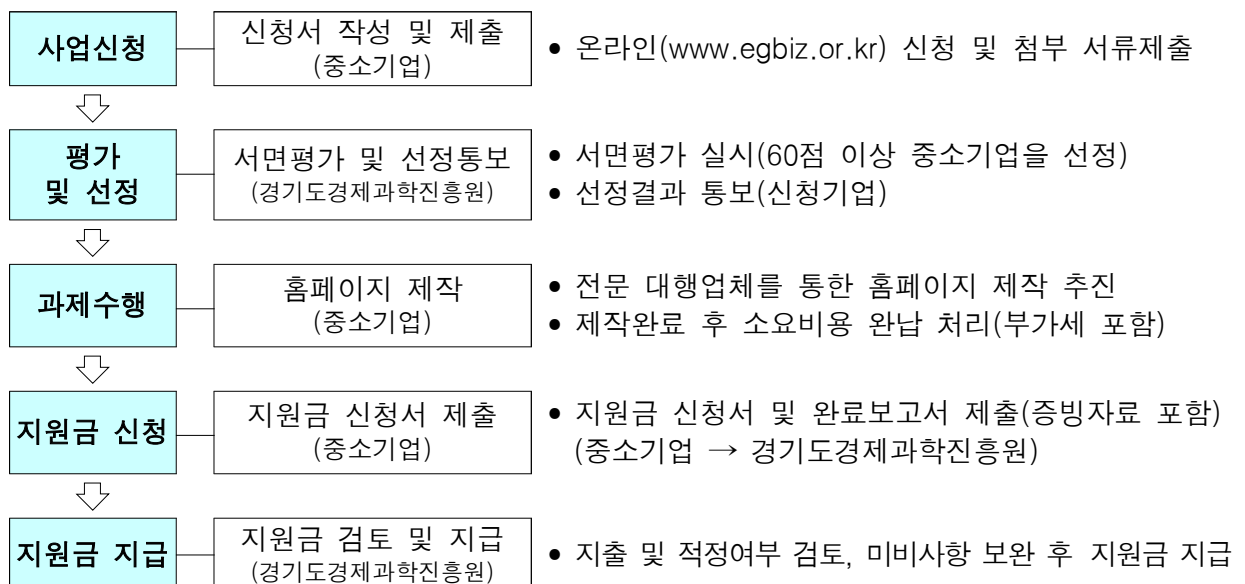
가. 지원목적

- 도내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e-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대내·외 경쟁력 제고

나.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: 한글이나 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홈페이지 제작비 지원
- 지원금액 : 총 소요비용의 50%, 최대200만원 한도(기업 당 연 1회 지원)
-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 - 쇼핑몰 제작은 지원에 해당되지 않음
 -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
 - 기존 홈페이지의 단순 유지보수의 경우 지원 제외. 단, 사업 담당자 검토 후 신규 제작 수준의 개선일 경우 지원 가능
 - 웹호스팅 비용(서버, 도메인, 인터넷 사용료 등) 등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제외
 - 제작 시 자체 도메인(주소) 구입을 원칙으로 함
 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문가(개인)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지원 제외
 -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지원 제외
 -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
 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 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홈페이지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【제23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 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홈페이지 제작 지원금 신청서 【제24호 서식】 - 완료보고용 제출 서식 【제6호 서식】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자세금계산서, 온라인입금확인증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<p>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</p> |

3.7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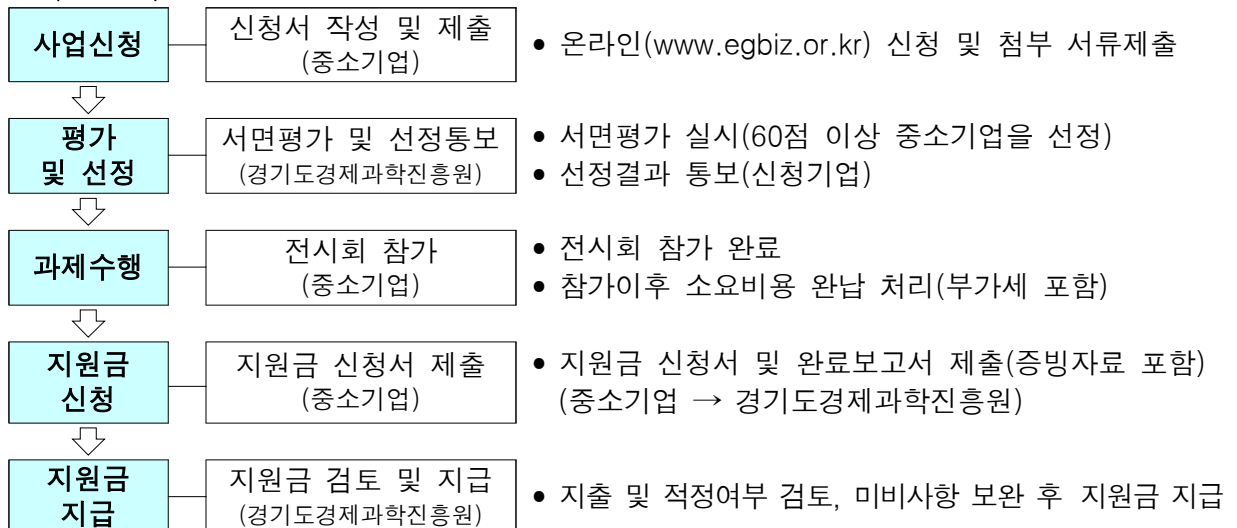
가. 지원목적

-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

나. 지원내용

- 지원내용 : 국내 전시회 참가 시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본 부스료, 기본 장치비 등
 - 기본 부스료 : 조립, 독립부스 임차료
 - 기본 장치비 : 전기, 전화(실비 제외), LAN(전용선), 고객관리(RF등록기)사용료, 압축 공기 사용료, 기타 전시·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
- 지원금액 : 총 소요비용의 50%, 최대 300만원 한도(기업 당 연 1회 지원)
 - 완료보고서 작성 시 전시참가 사진 첨부란에 반드시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 번호와 기업명이 보이는 전경사진(2매)과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와 인접한 타 부스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(2매) 첨부 필수
 - 기업명이 아닌 자사 내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으로 참여할 경우 완료보고서 제출 시 동일 기업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함
-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 -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내전시회는 지원 제외(예 : G-Fair Korea, 시군별 단체관 참여 등)
 - 심포지엄, 학술대회, 세미나 등은 지원 제외
 -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디스플레이 비용(가구 인테리어 및 홍보물 제작(카탈로그, 디렉토리 등)비용,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
 -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지원 제외
 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 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지원 신청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추진 계획서 【제25호 서식】 - 국내전시박람회 견적서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 |
| <p>지원금 신청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 【제26호 서식】 -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【제6호 서식】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자세금계산서, 온라인입금확인증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<p>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</p> |

3.8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

가. 지원목적

- 해외 전시·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해외기술 동향파악의 기회 마련 및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도모

나.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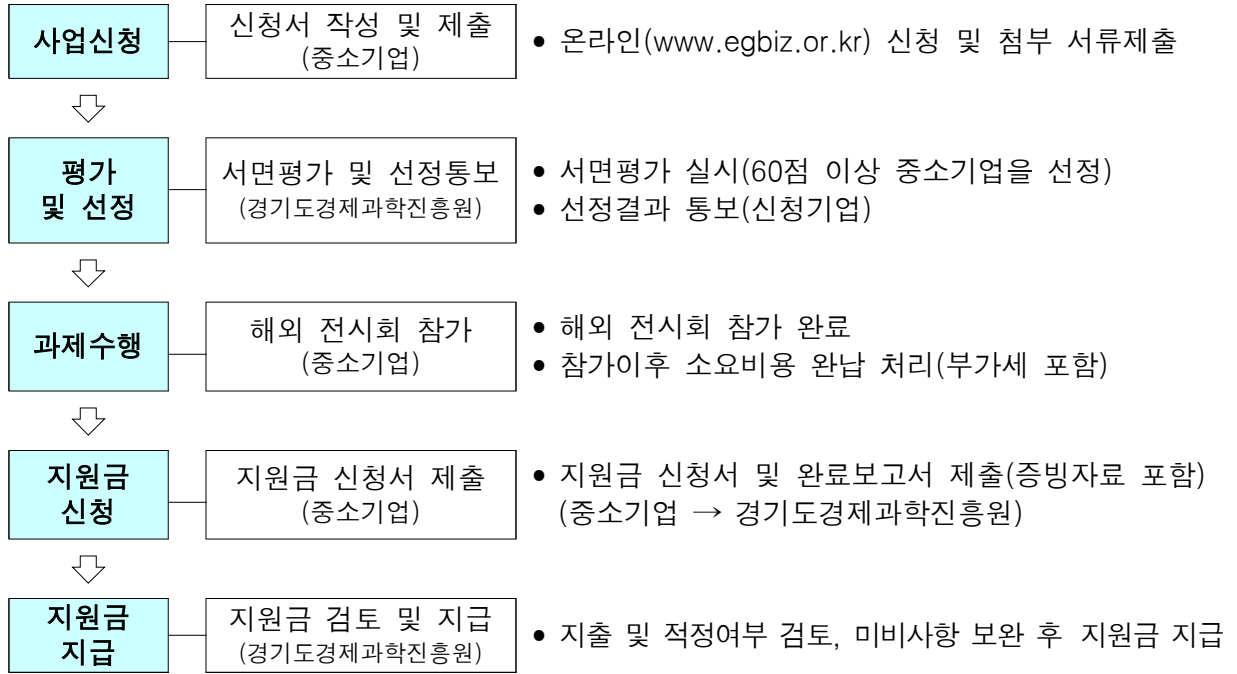
- 지원내용 : 해외 전시회 참가 시 필요한 기본 부스료, 기본 장치비 등 비용 지원
 - 특정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관이나 지정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한 해외 전시회에 자부담으로 先 참가하고, 그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
- 지원범위
 - 부스 임차비용(①), 부스 장치비용(②), 전시품 해상 편도운임 비용(1CBM)(③)

③ 전시품 편도해상운임비용

- 항공운임비용 지원 불가.
- 1CBM 기준 산정이며, 전시품 국내 입고장소(운송회사 지정장소)에서 해외전시장까지 소요되는 해상 편도운임 비용임.

- 지원한도 : 총 소요비용의 50%, 최대 500만원 한도(기업 당 연 1회 지원)
 - 지원금 = { ① + ② + ③ - (관세 + 부가세) } × 50% (최대 300만원 한도)
 - 완료보고서 작성 시 전시참가 사진 첨부란에 반드시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 번호와 기업명이 보이는 전경사진(2매)과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와 인접한 타 부스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(2매) 첨부 필수
 - 기업명이 아닌 자사 내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으로 참여할 경우 완료보고서 제출 시 동일 기업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함
-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 - 정부 및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기업 지원 제외
 - 심포지엄, 학술대회, 세미나 등은 지원 제외
 -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디스플레이 비용(가구 인테리어 및 홍보물 제작(카탈로그, 디렉토리 등)비용,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
 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 -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선정기업 명칭과 Invoice상 기업 명칭이 상이할 경우 지원 제외
 -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지원 제외
 -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(해외지사, 대리점, 에이전트 등)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 또는 계약금을 대납한 경우 지원 제외
 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추진계획서 【제27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※ 전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- 전시회 Invoice(참가전시회 정보 / 비용내역)사본 - 운임 비용 Invoice 사본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 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 【제28호 서식】 -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【제6호 서식】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참가전시회 주관기관이 발행한 부스임차비 / 부스장치비 영수증(Invoice) 사본 - 해상편도 운임 비용 영수증(Invoice) 사본 각 1부 - 소요비용 입금내역 ※ 원화 입금시 외국환 거래계산서 첨부 또는 카드영수증(법인카드일 경우만 지원, 카드 내역서도 첨부)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|

3.9 국내 홍보·판로 지원

가. 지원목적

-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·판로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

나. 지원내용

① 지원분야 : 전문잡지 광고비 지원

| 지원분야 | 지원금액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문잡지 광고비 지원 | 총 비용의 50%, 300만원 한도 | -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홍보 광고비 지원 |

○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
- 기업별 산업군 또는 업종 내 특화된(전문) 잡지 광고지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인 잡지 광고 지원 제외(* 사업 담당자 검토 후 지원 가능 여부 결정)
- 월간 발행 및 정기(분기별) 간행물 등 잡지 광고 지원 범위(기간)는 본 사업 만료일 이전으로 함(11월 분)
- 완료 후 광고 내용이 게재된 각 월별(분기별) 잡지원본 우편 제출 필수
- 잡지 인터뷰, 기사보도, 학회지 및 학술지 광고 지원 제외
- 이미 제작된 과제 또는 제작진행중인 과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
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② 지원분야 : 동영상 제작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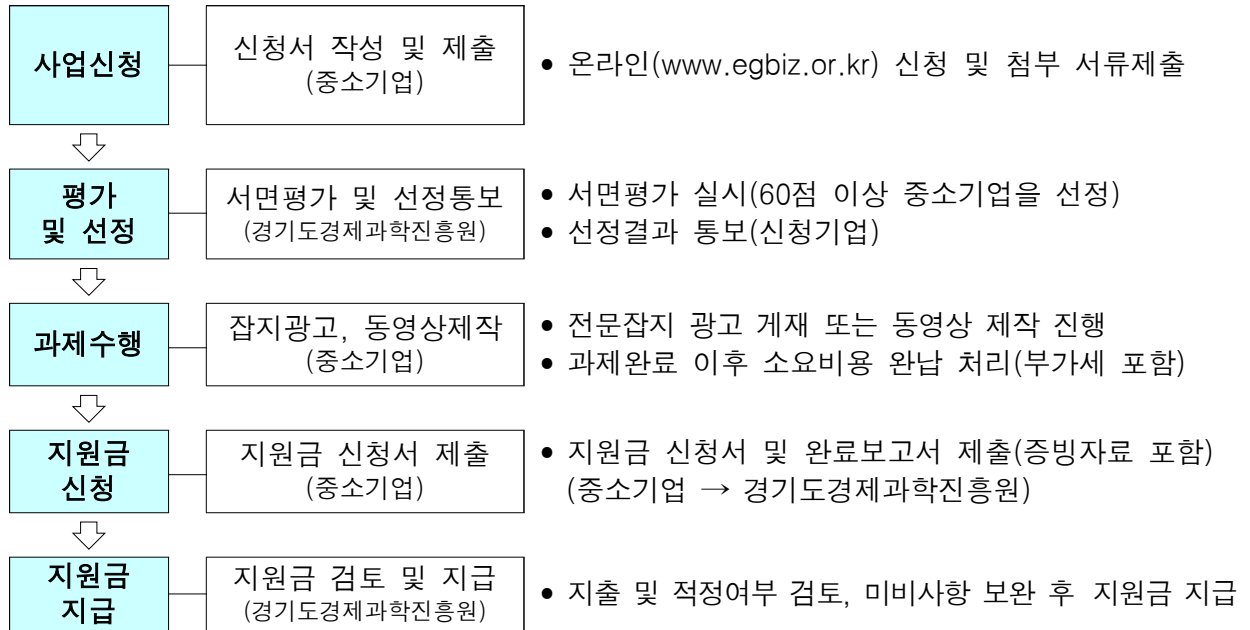
| 지원분야 | | 지원금액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동영상 제작지원 | 일반영상 | 총 비용의 50%, 300만원 한도 | - 기업 및 제품 홍보 위한 동영상물 제작 비용 지원 - 기업 당 연 1회 지원 |
| | 3D 영상 | 총 비용의 50%, 400만원 한도 | - 기업 및 제품 홍보 위한 동영상물 제작 비용 지원 (AR/VR 및 기타 3D 영상물 제작) - 기업 당 연 1회 지원 |

○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
-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
- 동영상물 제작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 전환위주로 제작하는 Web 3D 콘텐츠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
- 완료 후 동영상 결과물 CD 또는 USB 우편 제출 필수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문가(개인)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지원 제외
-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이미 제작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

- 실제 제작 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지원 제외
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국내홍보판로 지원(홍보동영상) 추진계획서 【제29호 서식】 - 국내홍보판로 지원(전문잡지) 추진계획서 【제30호 서식】 - 각 해당별 국내홍보판로 견적서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 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홍보판로 지원금 신청서 【제31호 서식】 -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【제6호 서식】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전문잡지 : 광고내용이 게재된 월별 잡지원본 (※ 우편송부) - 홍보동영상 : 동영상 결과물 CD 또는 USB(※ 우편송부_전체 및 30초 요약본)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자세금계산서, 온라인입금확인증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|

3.10 카탈로그 제작지원

가. 지원목적

-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카탈로그 제작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

나.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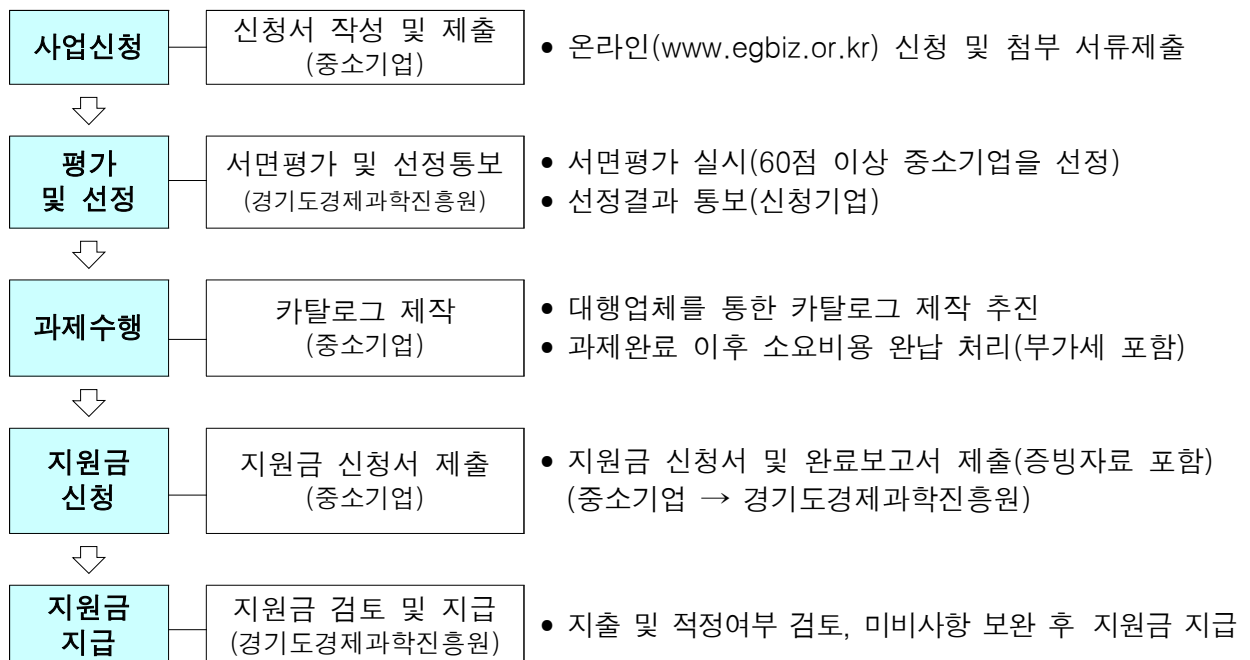
- 제작 완료 후 카탈로그(3부) 우편 제출 필수, e-카탈로그 제작의 경우 시연 영상 제출

| 지원분야 | 지원금액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카탈로그 제작지원 | 총 비용의 50%, 200만원 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국문 또는 외국어 판으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- 리플릿, e-카탈로그 제작 가능 - 기업 당 연 1회 지원 |

-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
- 이미 제작된 과제 또는 제작진행중인 과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
- 제작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지원 제외
-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
- 카탈로그의 내용이 순수한 기업 홍보물인 경우 지원 제외 단, 해당 내용 사업담당자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
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카탈로그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【제32호 서식】 - 카탈로그 제작 견적서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 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카탈로그 제작 지원금 신청서 【제33호 서식】 -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【제6호 서식】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지원 결과물 (언어별 제작된 카탈로그) (※ 우편송부)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자세금계산서, 온라인입금확인증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|

3.11 모바일 앱 제작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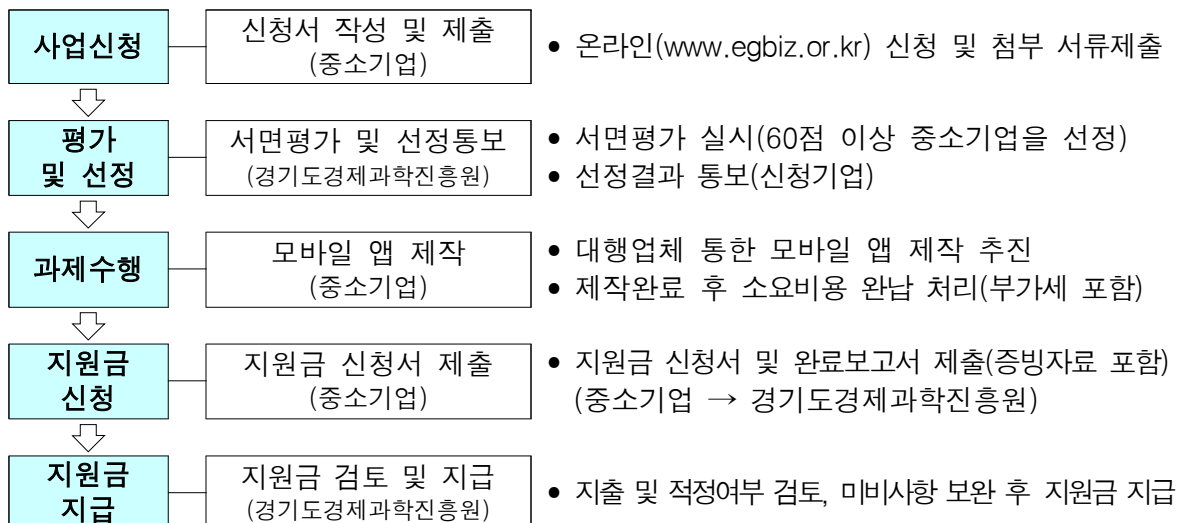
가. 지원목적

- 도내 중소기업의 모바일 앱 제작 지원을 통해 e-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대내·외 경쟁력 제고

나.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: 기업의 제품 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제작비 지원
- 지원금액 : 총 비용의 50%, 최대 150만원 한도(기업 당 연 1회 지원)
 -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시 결과물 메인화면 등 이미지 첨부 필수 및 사업 담당자의 실제 실행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
-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 - 기존 모바일 앱 수선·유지 보수의 경우 지원 제외
 -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
 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문가(개인)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지원 제외
 -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지원 제외
 - ※ 대행업체의 경우 실제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,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표기 확인 필수
 - 제작 완료 후 앱이 실제 구동이 되지 않거나,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
 - 단, 완료물 점검시점에 불가피하게(일시적) 실행이 불가할 경우 사업 담당자가 정한 기간 내 재점검 후 지급 결정
 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 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모바일앱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【제34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모바일 앱 구축 관련 견적서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(해당시 제출) 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바일 앱 제작 지원금 신청서 【제35호 서식】 -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【6호 서식】 - 앱 실행 영상 제출(※ 필요시)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전자세금계산서 사본, 온라인 입금증(이체확인증) - 신청기업 지급금 지급 입금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<p>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</p> |

3.12 제품 패키지 개선지원

가. 지원목적

-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포장 디자인 / 제작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 지원

나.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: 제품 박스, 봉투, 포장지, 스티커 등 포장 디자인 / 제작·개선 지원

※ 그 외 기타 기업에 필요한 제작물의 경우 담당자 검토 후 신청가능 여부 결정

- 지원금액 : 총 소요비용의 50%, 최대 300만원 한도(기업 당 연 1회 지원)

-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시 제작 및 개선 결과물 우편 제출 필수

-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
- 신규 개발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, 기존 패키지에 대한 개선의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후 신규 제작 수준의 개선일 시 지원 가능(※ 기존 제품에 대한 단순 수선·유지보수의 경우 제외)
-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
- 대행업체의 경우 실제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,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표기 확인 필수
-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제품패키지 추진계획서 【제36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- 포장디자인 / 제작 관련 견적서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 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품패키지 지원금 신청서 【제37호 서식】 -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【제6호 서식】 - 포장디자인 / 제작 결과물(※ 우편 제출)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전자세금계산서 사본, 온라인 입금증(이체확인증) -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입금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|

3.13 온라인 (소형)회의시스템 구축 지원

가. 지원목적

-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사무환경 구축 지원을 통해 수요기업의 업무 디지털화 촉진 및 효율성 제고

나.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: 온라인(화상) 회의 시스템 구축 위한 기본 장비 구입비용 지원
 - 사업신청 당시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우대
- 지원금액 : 총 비용의 50%, 최대 150만원 한도

| 기본항목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기본 장비 구축비 (소형) | - 화상 카메라, 마이크, 음향장비, 마운트, 회의 전용 디스플레이(전용 TV 및 PC) 장비 구축 비용 |
| 시스템 운영비 | - 화상 회의 솔루션 임차비용(월 또는 년 단위 사용 비용) · 솔루션 임차비용 : 최소 1년 이상 사용계약 필수 |

* 해당 기본항목 이외의 구축비용은 기업 자부담 편성

** 시스템 운영비 : 구축된 대행업체 장비 전용 솔루션 프로그램이 없어, 무료 솔루션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솔루션(소프트웨어) 임차 비용 지원제외

다. 지원요건

1. 회의 전용공간 확보

- 화상 회의실을 최소 2년 이상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필수. 사업 신청 전 회의실 구축 예정 공간을 이미 확정해논 상태이어야 함
- 기존 회의실이 없어 시설 일부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(화상) 회의실 구축 공간과 기존 일반 공간의 기능적·공간적 분리가 완료 되어있어야 함

2. 시스템 솔루션(운영프로그램) 비용

- 회의 시스템 솔루션 임차비용(소프트웨어)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용 필수 및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 사용이 원칙임
-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, 유료로他家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견적서 등 비용증빙 제출 필요

라. 지원제외 및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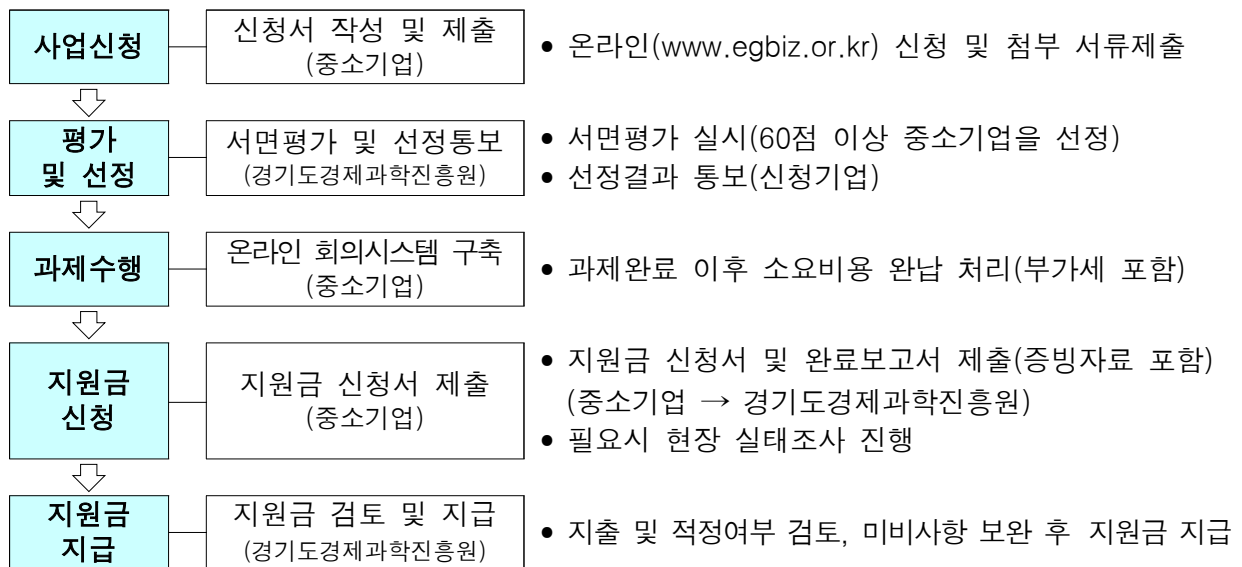
-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회의실을 구축하여야 함
 - ※ 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확인 필수
- 일반 쇼핑몰 및 유통업체 통해 장비를 (개별)구입하여 자가 설치하는 경우 불인정
- 기본 장비 구축 없이 단독 유료 솔루션(소프트웨어 프로그램)만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본 장비 구축만 진행할 시 지원 불가

- 기본 장비 구축 후 무료 솔루션(소프트웨어 프로그램) 사용 시 솔루션 비용지원 불가
- 비용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미비점 발견된 경우
-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
- 유의사항 등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마. 사업완료 및 지원금 신청

- 사업완료 후 장비 작동 및 운영 증빙문서 제출 필수(동영상 형태)
- ※ 시연 영상 녹화 본을 온라인(이지비즈)상 지원금 신청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 같이 첨부
- 증빙문서 부실 등 필요시 담당자 현장 실태조사 진행 후 지원금 지급여부 검토

바. 지원절차



사.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|--|
| 지원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대체) -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서 【제38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 - 구축비용 견적서 -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원(민원 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 |
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|---|
| 지원금 신청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지원금 신청서 【제39호 서식】 -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【제6호 서식】 - 완료 결과물(※ 사용 영상물 제출)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전자세금계산서 사본, 온라인 입금증(이체 확인증) -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입금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|

[별표 1]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

| 해 당 업 종 |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○ 환경 정화 및 복원업 | 39 |
| 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582 |
| 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| 5911 |
| 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| 5912 |
| ○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| 59201 |
| ○ 전기통신업 | 612 |
| 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| 62 |
| ○ 정보서비스업 | 63 |
| ○ 연구개발업 | 70 |
| ○ 광고업 | 713 |
| ○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| 714 |
| ○ 경영컨설팅업 | 71531 |
| ○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| 72 |
| ○ 전문디자인업 | 732 |
| ○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| 73902 |
| ○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| 73903 |
| ○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 | 73904 |
| ○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73909 |
| ○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| 74100 |
| ○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| 75320 |
| ○ 전시 및 행사 대행업 | 75992 |
| ○ 포장 및 충전업 | 75994 |

※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

☞ <http://kostat.go.kr>(통계청사이트) → 통계분류포털 → 한국표준산업분류 → 검색 → 분류검색 →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→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

| 업 종 | 품목코드 | 해 당 업 종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조업 | 33402中 |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|
| | 33409中 |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|
| 도매 및 소매업 | 46102中 | 주류, 담배 중개업 |
| | 46109中 | 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 |
| | 46209中 | 잎담배 도매업 |
| | 46331, 3 | 주류, 담배 도매업 |
| | 46416中 | 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 |
| | 46463中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|
| | 47640中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|
| | 47859中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47911中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 | |
| 음식점 및 주점업 | 56211~2 | 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 |
|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| 58122中 | 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|
|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| 5821中 |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| 63999中 |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 |
| 금융 및 보험업 | 64~66 | 금융 및 보험업 |
| 부동산업 | 68 | 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 |
|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| 69390中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전문서비스업 | 71531中 | 기획부동산업 |
| 사업지원 서비스업 | 75330中 | 흥신소 |
| | 75993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
| | 75999中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
|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| 91113 | 경주장 운영업 |
| | 91121 | 골프장 운영업 |
| | 9122中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|
| | 91249 |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|
| | 91291 | 무도장 운영업 |
|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9612中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|
| | 96992 | 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 |
| | 96999中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

※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